공무원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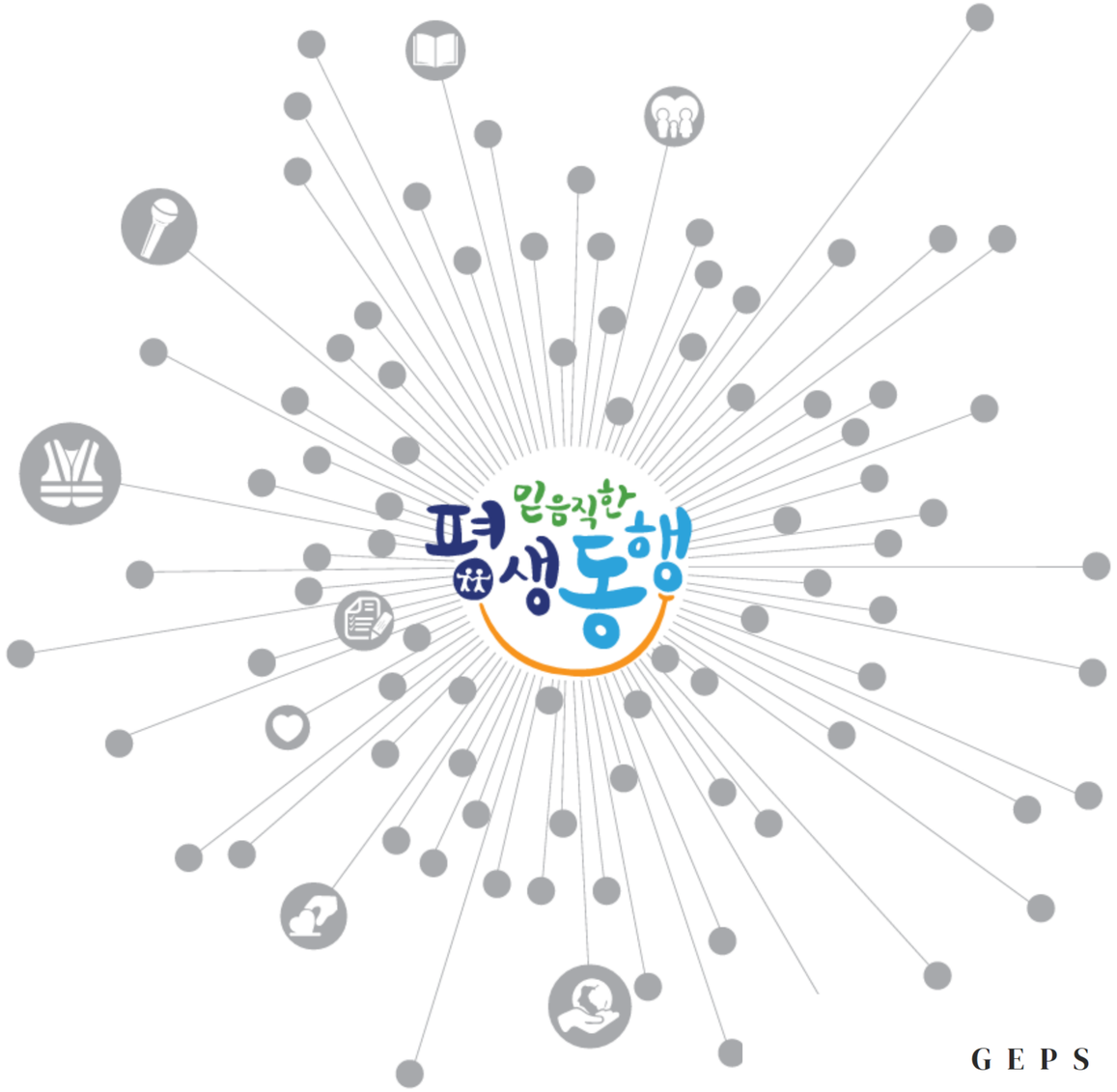

신규임용자를 위한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공무원연금제도 편

www.geps.or.kr

G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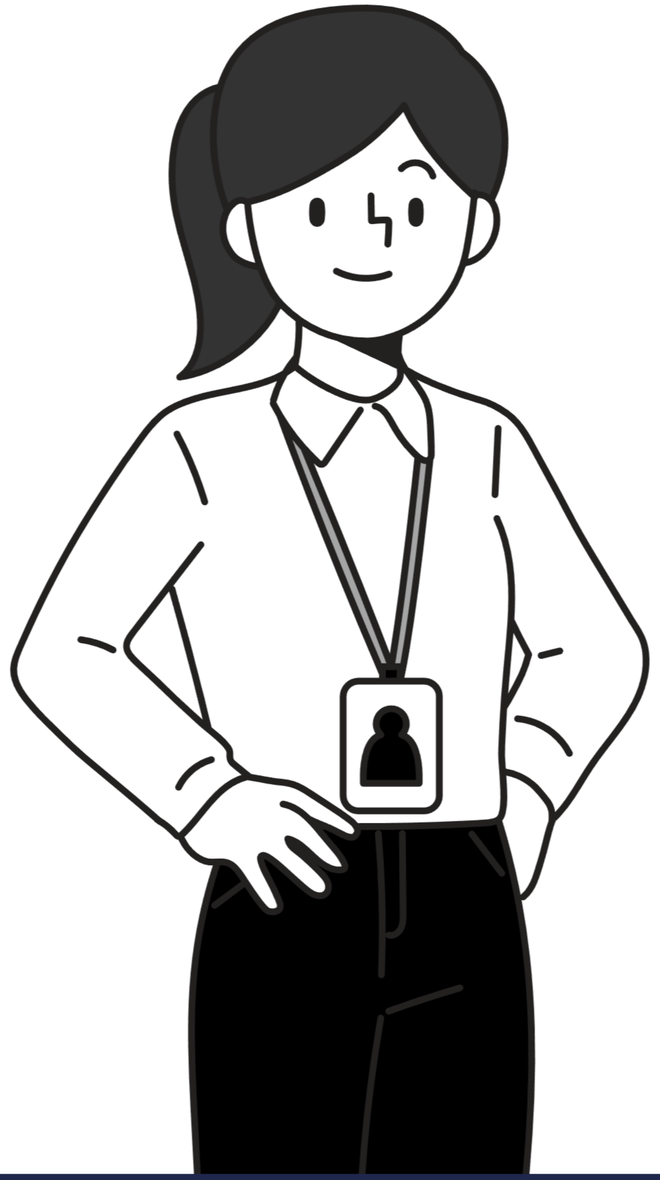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의 생활안정 # 복리향상 # 공무원연금제도의 목표

I

공무원연금공단 소개

공무원생애주기별 서비스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비용부담
급여의 지급
급여의 안정적 지급 보장

II

공무원연금제도

재직기간 및 기여금 징수
퇴직(유족) 급여제도

1 공무원연금공단 소개

안녕하세요

-공무원생애주기별 서비스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연금급여의 재원
-급여의 지급
-급여의 안정적 지급 보장

기관연혁

1982년 2월 창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1960.01.01.

공무원연금법 제정

정부(총무처 연금국)에서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1980년대

1982.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창단

1983.1.
연금업무 및 재해보상업무 시작

1983.12.
공무원임대주택사업 시작

1990년대

1993.10.
공무원주택분양사업 시작

1999.7.
지방사무소(현 지부) 운영 개시

2000년대

2000.5
퇴직예정공무원
퇴직준비교육업무 개시

2005.5
맞춤형복지서비스 개시

2009.8.
공적연금연계제도 실시

설립목적과 주요기능

설립목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대상고객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원이 부양하는 가족이 공단의 핵심고객

주요기능

연금업무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 징수
퇴직,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 지급

재해보상

재해보상급여 지급
재해예방, 재활, 직무복귀 등 지원

기금운용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주택임대, 공무원대출, 후생복지시설 운영

기타 국가위탁

대여학자금대부
맞춤형 복지 업무

(자료) 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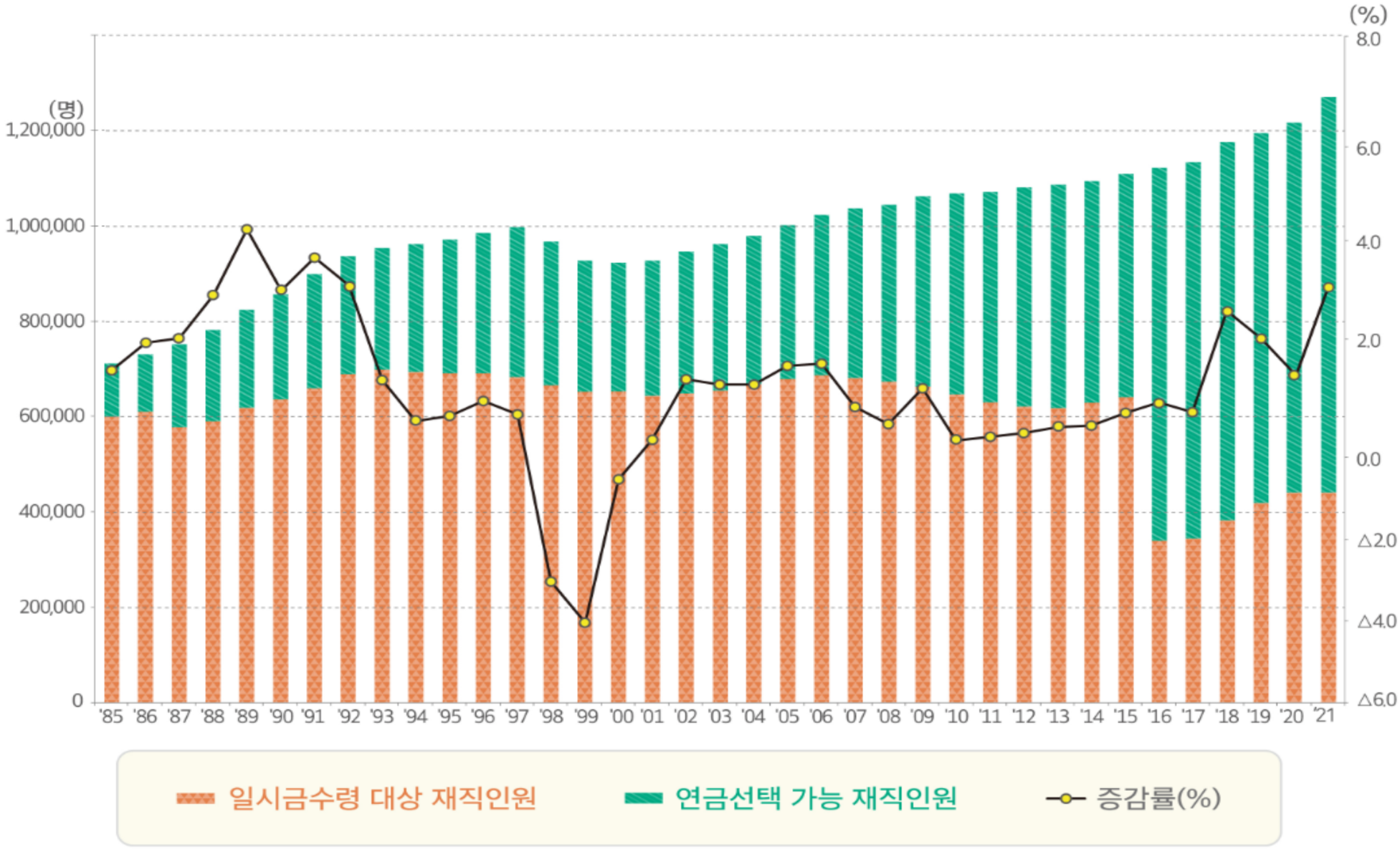

창단 이후

창단 이후 사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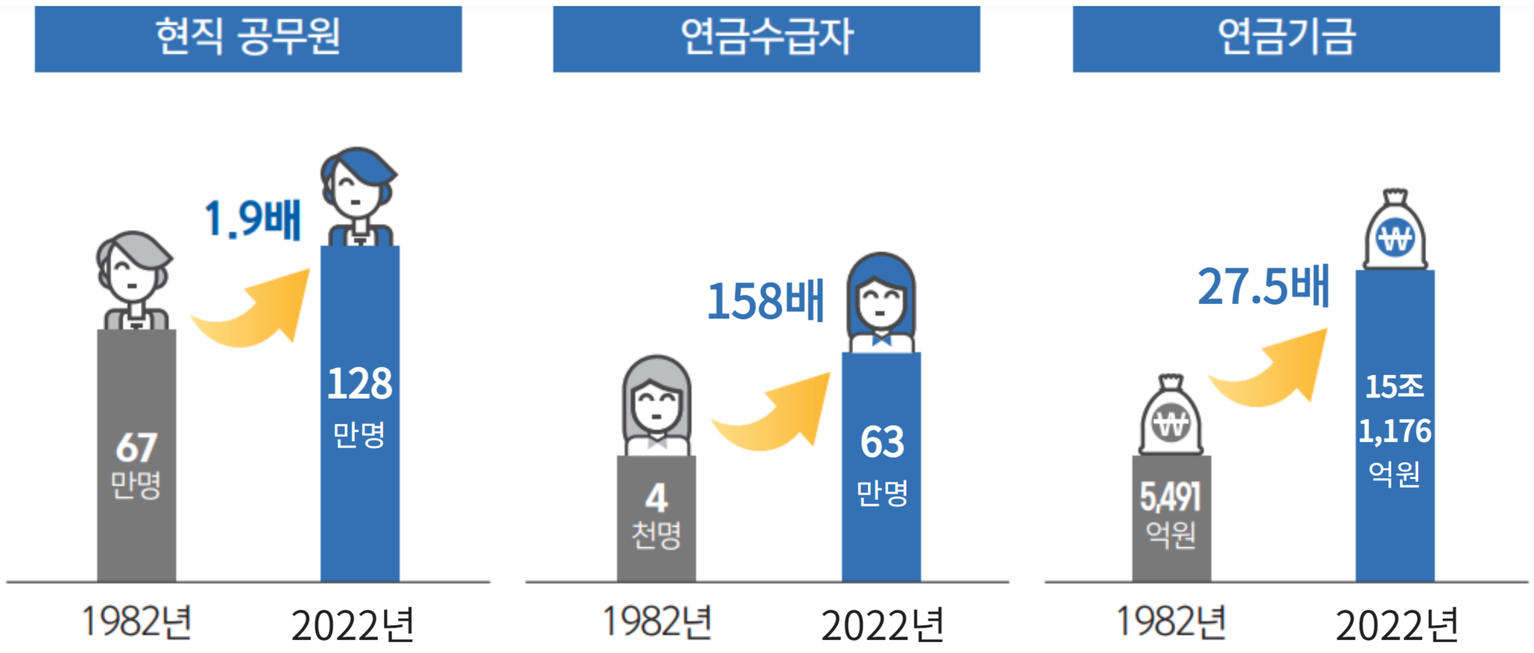

창단 이후 가입자는 1.9배, 수급자는 158배 증가, 기금 규모는 22년말 기준 15조 1,176억

공무원 생애주기별 서비스

임용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복무 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기간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가산
-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

재직
- 취미활동,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휴서비스 제공(여행, 건강검진, 상조, 쇼핑몰 등)
-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학자금 대출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 부모(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사망조위금

퇴직
- 퇴직급여 지급
- 퇴직 후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평생학습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망
- 재직 중(퇴직 후) 사망, 연금수급자 사망 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을 위한 유족급여 지급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제도의 목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퇴직 후 안정된 생활 지원

※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 ※ 2001년 보전금제도 도입

비용부담

공무원연금 급여의 재원은 : 개인기여금 + 연금부담금 + 보전금

법정비용부담률	
개인기여금	정부부담금
9%	9%

* 법정비용부담금(18%) 외 급여 부족액은 매년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시 기관에서 기여금 원천징수, 부담금은 정부에서 납부

기타 퇴직수당, (공무상)재해보상 급여는 전액 국가부담

급여의 지급

재원부담 주체 : [정부 + 공무원]

소득보장

구 분	퇴직공무원	유 족
재직기간 10년이상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재직기간 10년미만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재원부담 주체 : [정부]

근로보장

구 분	내 용
퇴직수당	재직 1년 이상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 성격

재해보장

구 분	내 용
장해급여 요양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

기타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급여의 안정적 지급 보장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 입		지 출	
기여금	6조 2,917억원	퇴직급여(연금)등	18조 1,683억원
부담금 등	10조 1,445억원	퇴직수당 등	2조 7,130억원
보전금	4조 4,451억원		
계	20조 8,813억원	계	20조 8,813억원

2 공무원연금제도 소개

- 기여금과 재직기간
- 퇴직급여

기여금과 재직기간

재직기간이 증가할수록

퇴직급여액이 늘어나고, 총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X 9% (매년 5월 ~ 다음해 4월까지 동일)

*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기준소득 - 공무원 8개 보수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기준소득 :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 과세소득 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년 이후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퇴직연금산정의 기준보수)

기여금의 종류

기여금의 종류	
일반기여금	임용된 달부터 재직기간 33~36년까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매년 5월에 조정되어 다음연도 4월까지 1년간 변동되지 않음)
소급기여금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사병산입), 소급통산승인, 보수미지급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승인 다음달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합산반납금	임용 전 직역연금법(공무원,군인,사학)상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경우 기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납부금

기본 재직기간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

기여금납부기간(공무원연금법제 67조)	
2015.12.31.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015.12.31.기준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 경우	34년
2015.12.31.기준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2015.12.31.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전출입 특례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않고, 전·출입특례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사병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 의무(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 단기사병,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예술·체육요원 및 군복무기간 대체복무자 제외)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 공중보건의사는 1992년 5월 이전 복무기간만 산입대상(이후는 합산 신청 대상)

기여금 납부는?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달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수만큼 계산하여 일시납부 가능

취소가능여부?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승인받은 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취소 가능
(이후 재산입신청 가능)

재직기간 합산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합산 반납금 납부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6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분할이자가 가산
- 재직 중 합산 기간 전부 또는 일부 취소(제외) 신청 가능

소급통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소급하여 통산 가능

(인정기간) 2018. 9. 21 이전 시간제공무원 재직기간

(대상자) 2018. 9. 21 당시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 소급재직기간 산입신청과 관련, '퇴직금수령 및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입여부'는 재직 중에만 변경 가능

기여금 납부는?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달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수만큼 계산하여 일시납부 가능

취소가능여부?

소급통산 산입을 승인받은 후에는 취소 불가

※ 소급통산 승인 기간에 대해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 환급됨

퇴직(유족)급여 제도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유족) 급여 지급

퇴직급여의 종류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

구분	급여의 종류	비고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기타급여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선택자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미 청구시, 시효로 소멸)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연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일시금

구분	급여의 종류	비고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하는 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은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유족연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구분	급여의 종류	비고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급여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수당

구분	급여의 종류	비고
기타 급여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선택자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퇴직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유족이 퇴직유족연금 신청시 퇴직유족 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지급

급여의 제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 5년 미만	재직 5년 이상	
금고이상	1/4	1/2	1/2
징계파면	1/4	1/2	1/2
징계해임	1/8	1/4	1/4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 형사재판 중인 경우 급여유보	
대상급여	유보액
5년 미만자 퇴직급여	1/4
5년 이상자 퇴직급여	1/2
퇴직수당	1/2
연금(형 확정될 때까지)	전액지급

급여의 제한

합산시 형벌 유무에 따른 급여 제한

종전 재직기간(A)	재임용 재직기간(B)	합산 시 급여
형벌 O	형벌 X	(A/2)+B (형벌있는 기간 감액)
형벌 X	형벌 O	(A+B)/2 (전기간 감액)

* 형벌은 금고이상의 형 확정,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가정

급여는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

- 퇴직급여(퇴직수당)는 공무원이 퇴직(사망)한 경우 반드시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급여가 지급됨

  ※ 정년 또는 명예퇴직은 퇴직 1개월 전에도(교육직 2개월 전) 사전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 가능

  : 일반직 6월, 12월 말 / 교육직 2월, 8월 말

- 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또는 재임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에도 퇴직 후 바로 청구하여야 지급됨

- 또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수당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면 바로 청구

급여 청구 절차

청구 절차

(인터넷 청구)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

※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퇴직연금안내 - 퇴직급여 청구

(우편 청구) 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입자관리실로 팩스, 우편 송부

※ (우편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 우편번호 63568

(전화 청구) 재직기간 4년 이하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를 통해 전화 청구도 가능

청구기한 및 서류

(청구기한)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구비서류) 퇴직급여청구서, 명예퇴직수당 원천징수 영수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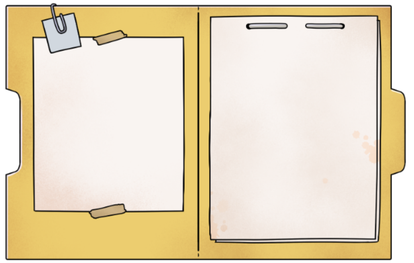

연계 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연금법상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연계제도

연계제도 시행 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국민연금 수급불가

(반환일시금)

공무원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연금 수급불가

(퇴직일시금)

연계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합계 10년(군인연금 포함 20년) 이상일 경우 연금수급가능

(가입기간만큼 각 연금기관에서 수급)

연계제도

적용대상

- 연계신청은 두 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이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함
- 원칙적으로 2009. 8. 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제도가 적용
- 다만, 적용 특례로 아래의 경우에도 연계적용 대상에 포함

① 국민연금 → 직역연금 : 2007. 7. 23. 이후 직역연금에 이동한 경우(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했지만 2007. 7. 23.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반환 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② 직역연금 → 국민연금 : 2009. 2. 6. 이후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신청 불가

연계대상기간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의 당연가입기간(60세 이전 기간)
- 직역연금 : 총재직기간 =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

연계제도

연계신청

공적연금 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에서 신청하거나, 가입이력이 있던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한 곳에만 연계 신청

※ 연계신청 후 철회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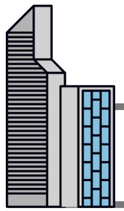

연계급여청구

- 연계급여는 지급사유 발생 후 가입이력, 연계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각각 청구
-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일괄 청구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3 연금관련 기타 안내

- 업무관련 부서안내
- 공무원연금가족증
- D-연금동행

업무관련부서 안내

연금업무 무결점 시스템의 고도화로 고객서비스 품질 증대

공무원에게 보다 가까운 고품질의 연금서비스를 제공

업무관련 부서안내

- 연금운영실(재직기간, 합산, 수급자 관리 업무 등)
- 가입자관리실(기여금징수, 퇴직· 유족급여) 및 10개의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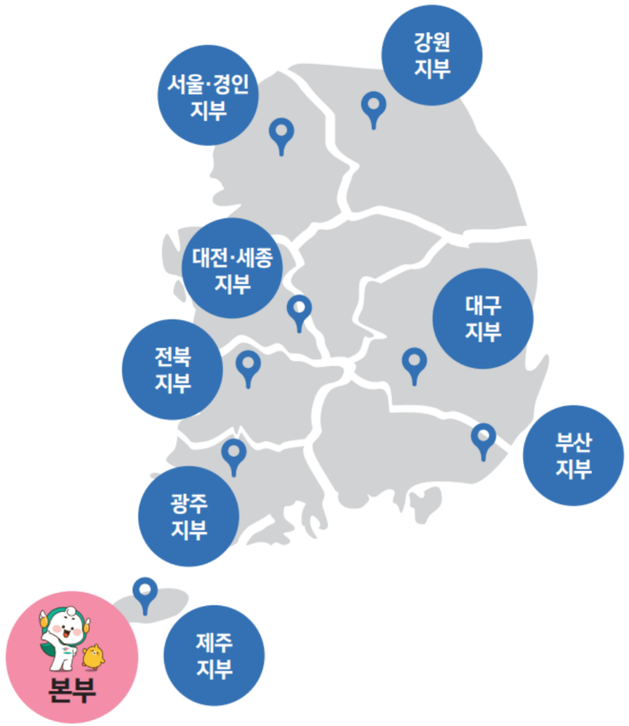

구 분	주 소
연금운영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1층 연금운영실
가입자관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3층 가입자관리실
재해보상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8층)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6층)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경인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6층)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세종지부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700)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오피스텔)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02호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 상공회의소 3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주)현대해상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1588-4321)

모바일 공무원연금증

공무원연금증이 내 스마트폰 속으로 쏙!

공무원연금증이란 재직공무원, 공무원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종의 연금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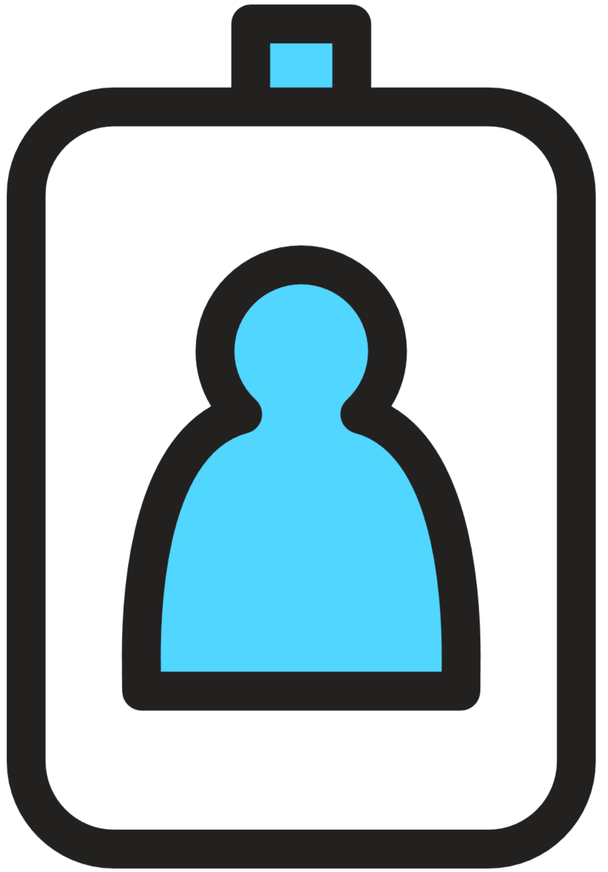

공무원 연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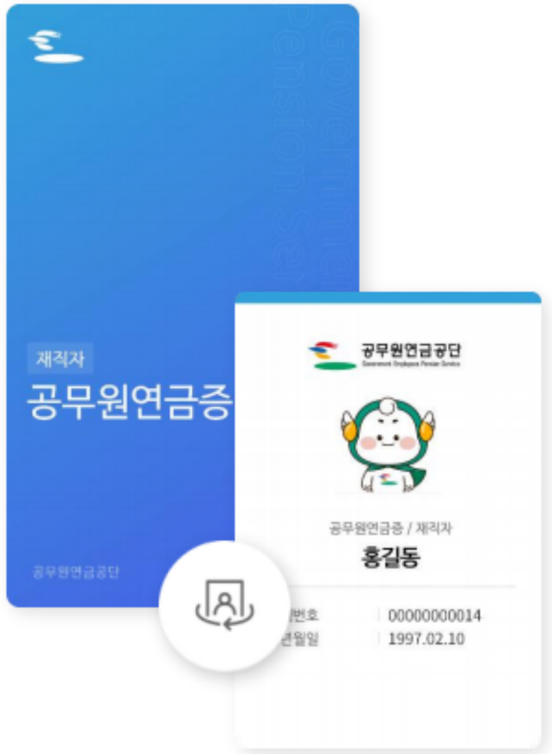

- 재직공무원, 공무원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종의 연금신분증
- 공단 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 간편 로그인 기능 제공
- 공단이 제휴복지서비스를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호텔·리조트를 포함한 숙박시설, 건강검진센터 등을 이용할 때 신분확인용으로 사용 가능

가지고 다니기 쉽고, 신분 확인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증을 스마트폰에 발급 받아 사용해 보세요

공무원 연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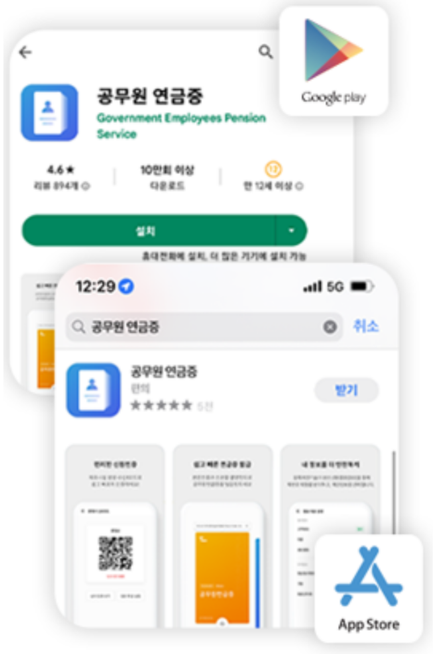

발급절차

1.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공무원 연금증' 앱 설치
2. 본인 인증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
4. 신분증 사진과 본인 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발행'

D-연금동행

공무원연금 관련 맞춤형 교육컨텐츠

연금제도, 복지제도, 외부연계 강의 등 22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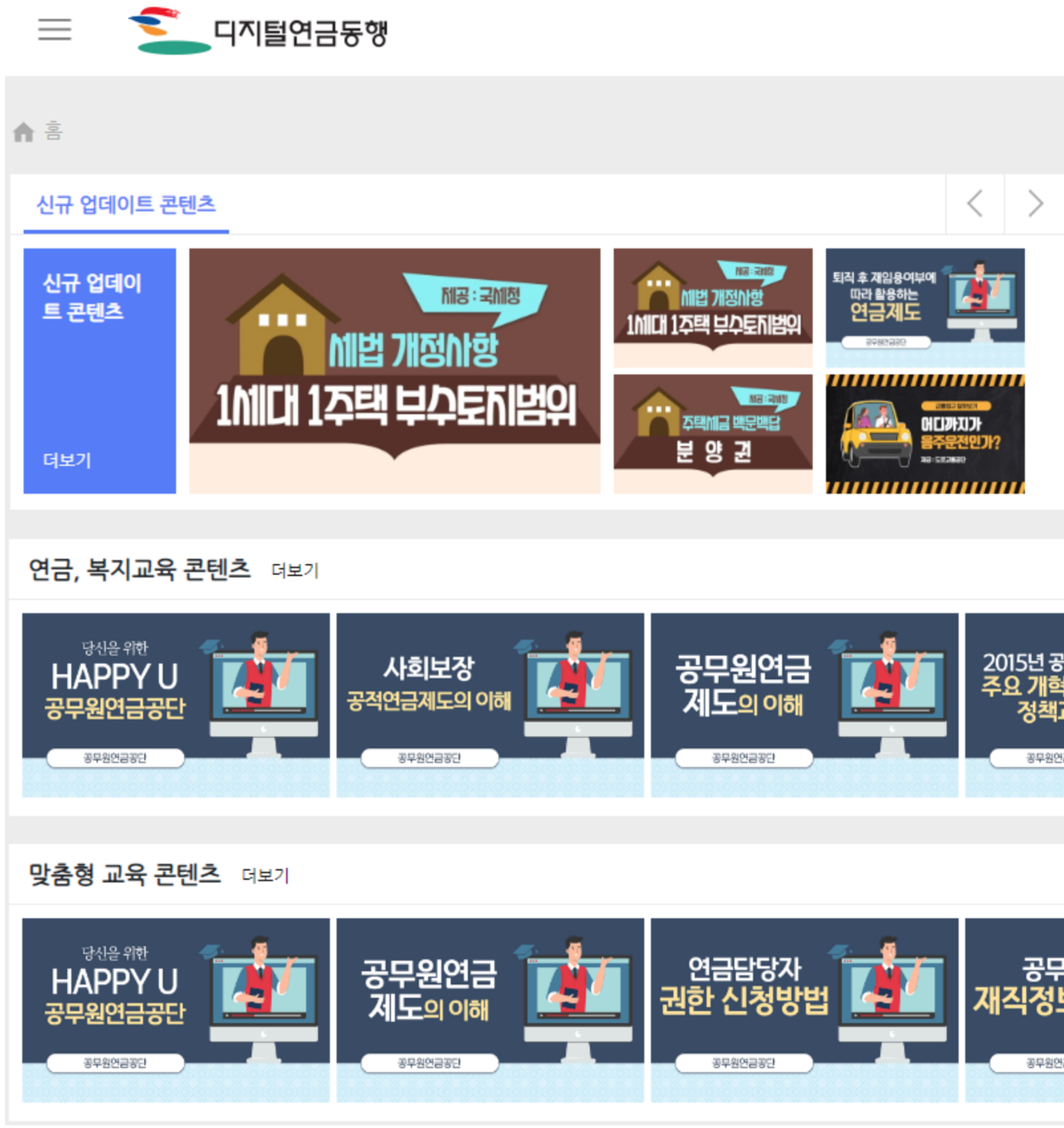

D-연금동행

D-연금동행 접속 방법 안내

연금복지포털 접속 → 온라인 연금교육(D-연금동행) 바로가기 클릭

D-연금동행(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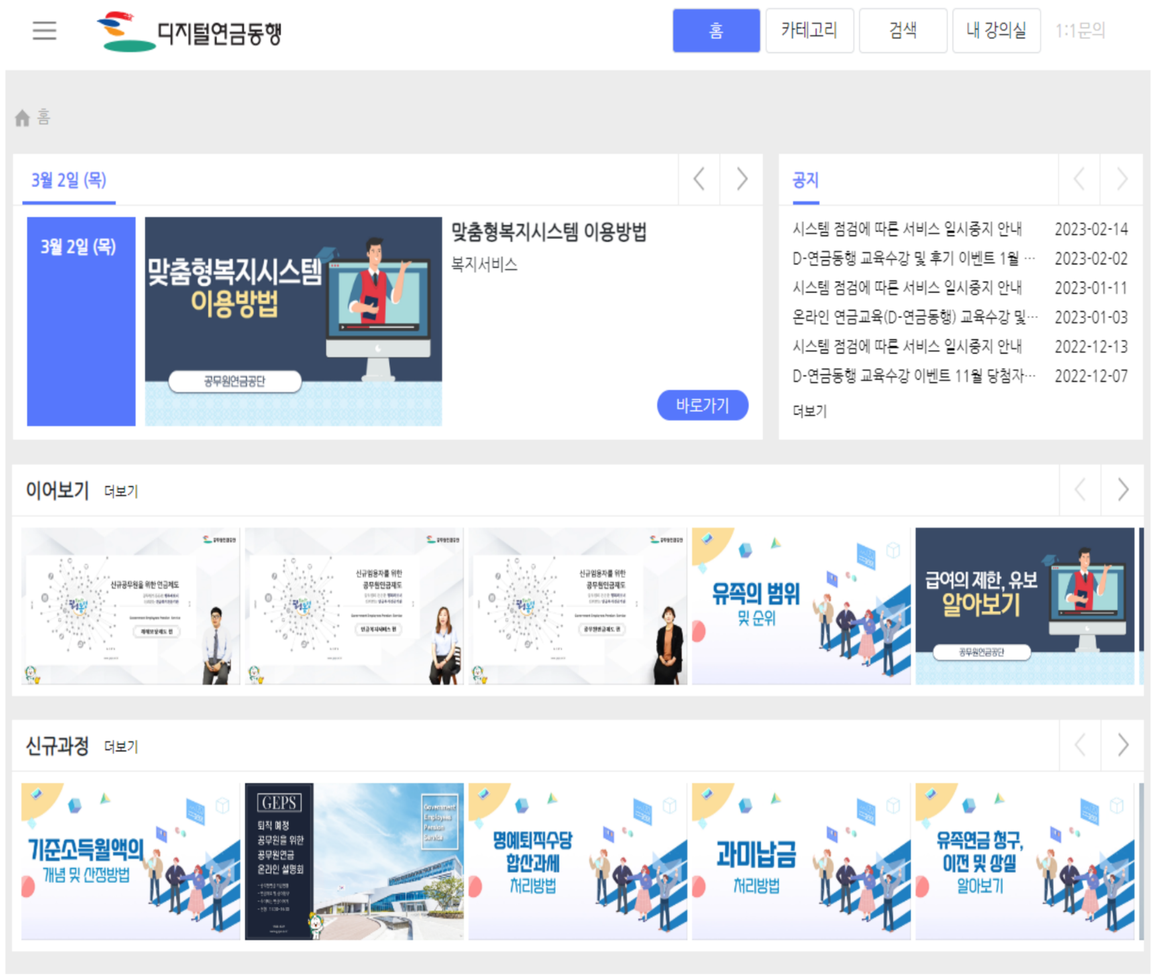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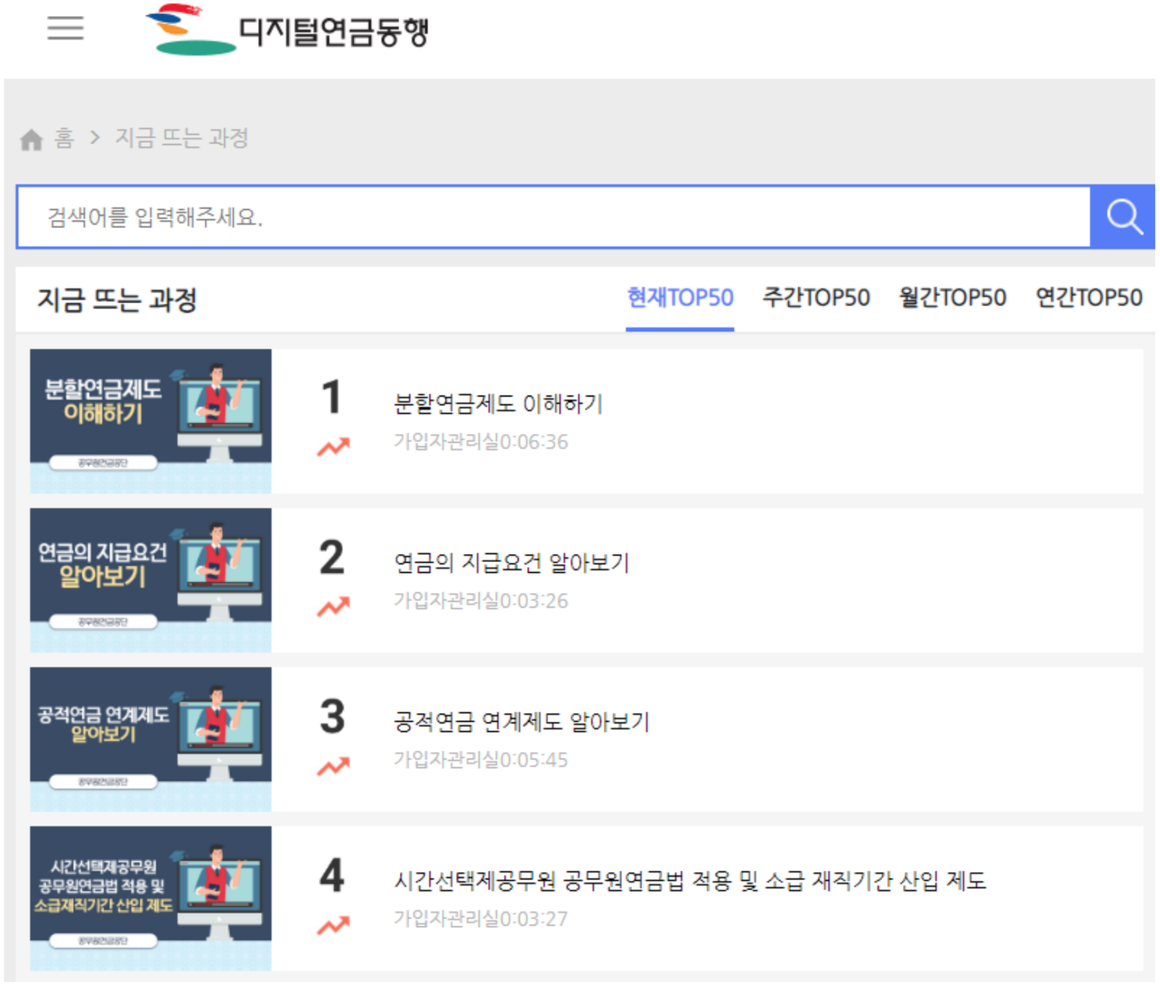
D-연금동행(지금 뜨는 과정)